

본 양식은 대리모 계약(가족법 제 7962 조에서 “대리모를 위한 보조생식 계약”이라고도 함)을 근거로 친자관계를 결정하는 판결을 요청할 때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서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개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법원의 온라인 셀프 헬프 가이드 (selfhelp.courts.ca.gov/parentage/surrogac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은 사건이 개시된 방법,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여부 및 판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양식을 통해 다음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친자관계 결정 공동 신청서(양식 SUR-100(J)) 를 제출하여 판결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② 소환장(양식 SUR-110) 및 친자관계 결정 신청서(양식 SUR-100) 가 접수 및 송달되고, 대리모 계약 사본이 제출되고, 법령상 요구되는 진술서가 접수되고, 상대방(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이후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상대방(들)과의 서면 합의가 있으므로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였으며,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서면 합의가 있음.
-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합의가 없음.

!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에게 판결(양식 FL-250) 및 판결 등록 통지서(양식 FL-190) 를 우편 발송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액의 우표가 부착된 충분한 크기의 봉투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귀하에게 제공되는 우편이 부착된 봉투 1 개는 의뢰 부모에게 해당 서류를 우편 발송하기 위한 것입니다(의뢰 부모가 두 명의 서로 다른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제외).
- 나머지 봉투 1 개는 해당 서류를 대리모 및 해당하는 경우 대리모의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우편 발송하기 위한 것입니다(이들이 두 명의 서로 다른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제외).

① 공동 신청 절차

다음 서류 모두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접수합니다.

- 친자관계 결정 공동 신청서(양식 [SUR-100\(J\)](#)) 를 접수합니다.
- 제출 통지서(양식 [SUR-113](#))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를 사용하여 대리모 계약을 제출합니다.
- 공증받은 대리모 계약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제출합니다. 해당 계약에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인증된 영문 번역본.
 - 의뢰 부모(들)의 변호사 진술서.
 - 대리모 및 그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의 변호사 진술서.
- 가족법 제7962조 준수를 위해 아래 사람들의 진술서를 접수합니다.
 - 각 의뢰 부모(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 대리모.
 - 해당하는 경우 대리모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 난임 전문의(가족법 제 7962 조 제 (d) 항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함).
- 판결(양식 [FL-250](#)), 모든 첨부서류 및 사본을 제출합니다.
- 판결 등록 통지서(양식 [FL-190](#)) 및 사본을 제출합니다.



② 양식 SUR-100 및 SUR-110 이 송달된 후 사건 종결하기

귀하의 사건에 적용되는 상황을 선택하십시오.

필석 절차

(친자관계 결정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양식 SUR-120)가 접수 및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은 법적 친자관계에 관한 서면 합의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리모 계약이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었으며, ①에 명시된 진술서가 법원 서기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작성 후 법원 서기에게 접수할 양식:

- 소환장 송달 증명서(양식 [SUR-115](#)) 또는 기타 송달 증명서.
- 필석확정 요청서(양식 [SUR-165](#)).
- 필석판결 또는 다툼 없는 판결을 위한 진술서(양식 [SUR-230](#)).
- 판결(양식 [FL-250](#)), 모든 첨부서류 및 사본.
- 판결 등록 통지서(양식 [FL-190](#)) 및 사본.

합의가 있는 필석 절차

(친자관계 결정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양식 SUR-120)가 접수 및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은 법적 친자관계에 관한 서면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대리모 계약이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었으며, ①에 명시된 진술서가 법원 서기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작성 후 법원 서기에게 접수할 양식:

- 소환장 송달 증명서(양식 [SUR-115](#)) 또는 기타 송달 증명서.
- 필석확정 요청서(양식 [SUR-165](#)).
- 필석판결 또는 다툼 없는 판결을 위한 진술서(양식 [SUR-230](#))
 - (현역 복무를 시작한 미국 군인의 경우): 군사민사구제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진술 및 조건부 포기서(양식 [SUR-230\(A\)](#)).
 - 당사자들 및 해당하는 경우 그 변호사들이 서명한 서면 합의를 첨부합니다.
피신청인의 서명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판결(양식 [FL-250](#)), 모든 첨부서류 및 사본.
- 판결 등록 통지서(양식 [FL-190](#)) 및 사본.

다툼 없는 절차

(친자관계 결정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양식 SUR-120)가 접수 및 송달되지 않았습니다(또는 피신청인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법적 친자관계에 관한 서면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대리모 계약이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었으며, ①에 명시된 진술서가 법원 서기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작성 후 법원 서기에게 접수할 양식:

- 소환장 송달 증명서(양식 [SUR-115](#)) 또는 기타 송달 증명서.
- 필석판결 또는 다툼 없는 판결을 위한 진술서(양식 [SUR-230](#)). 당사자들 및 해당하는 경우 그 변호사들이 서명한 서면 합의를 첨부합니다.
- 판결(양식 [FL-250](#)), 모든 첨부서류 및 사본.
- 판결 등록 통지서(양식 [FL-190](#)) 및 사본.

다툼 있는 사건

(친자관계 결정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양식 SUR-120)가 접수 및 송달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해당 친자관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은 다툼 있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당사자들은 당사자들과 자녀(들) 간의 법적 관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대리모 계약이 있는 사건에서, 법원은 대리모가 생물학적 부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족법 § 7551(b)(1)(B)). 법원이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하기 위해,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명령 요청서(양식 [FL-300](#))를 제출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검사를 명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 및 다른 사람이 가족법에 따른 제한적 유전자 검사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귀하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십시오.

재판 청구하기

유전자 검사로 자녀의 법적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재판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은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 준비서면 제출 등 귀하가 수행해야 할 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셀프 헬프 센터](#)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재판 청구 및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판결

유전자 검사 또는 재판이 끝난 후에는 최종 서류(판결문)를 작성하여 서명을 위해 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판결(양식 [FL-250](#)) 및 판결 등록 통지서(양식 [FL-190](#))를 작성하고 본 양식 1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가 진행되나요?

- 당사자들은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들이 공동 신청을 제기하더라도, 판사는 판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질의하기 위해 심리 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자들은 또한 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령 요청서에 대한 정보 시트(양식 [FL-300-INF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본 양식은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 캘리포니아 입양-보조생식기술 (ART) 변호사 협회 (www.acal.org/member-directory/)를 통해 보조생식기술 관련 법 및 생식 관련 법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 변호사 협회,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 (www.calbar.ca.gov), 또는 변호사 추천 서비스 (1-866-442-2529)를 통해 변호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 서비스(자격이 있는 경우)는 www.lawhelpca.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법원의 가족법 지원 담당자 또는 셀프 헬프 센터에 문의하여 관련 정보 및 지원을 받고, 지역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를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selfhelp.courts.ca.gov/court-based-self-help-service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친자관계 사건의 개시 및 종결에 대한 단계별 안내 사항은 캘리포니아 법원 셀프 헬프 가이드 (selfhelp.courts.ca.gov/parentag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